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3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3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 사항을 반영 및 사용 용어를 변경하고, 실제 마포구 제안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합리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안자 구체화를 통한 용어 정비(안 제1조~제4조)
- 나. 국민 제안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(안 제15조)
- 다. 제안등급의 일관성 도모(안 제23조)
- 라. 맞춤법에 따른 정비(안 제 27조)
- 마. 마일리지 부여 관련 별표 추가 및 삭제(안 별표 제3조)
- 바. 별지서식 추가(안 별지 제1호서식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8조

2) 「국민 제안 규정」

3)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4. 2. 29. ~ 3. 2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5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원안의결(2024. 3. 26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민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”을 “구정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)”을 “마포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(이하 “주민 등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구민”을 “주민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구민”을 각각 “주민 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”를 “공무원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1호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”를 “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재심사를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심사를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제안등급 중 금상·은상·동상·장려상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구청장 표창(상장) 및 부상을 수여한다.

③ 제1항의 제안등급 중 노력상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부상을 수여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노력제안”을 “노력상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구청장표창”을 “구청장 표창”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, 별표 4는 별지와 같이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8조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마포구민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제안”이란 서울특별시 <u>마포구민</u>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사. (생략)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“공모제안”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<u>구민과 공무원이</u>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</p> <p>5.·6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구정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마포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</u>(이하 “주민 등”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주민 등</u>----- -----.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

제4조(제안의 제출) ① 구민과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과 공무원은 규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,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·우편·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3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략)

②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1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~ 5. (생략)

제20조(재심사)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

제4조(제안의 제출) ① 주민 등  
-----  
-----.

② ----- 주민 등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공무원으로 한다.

제15조(위원의 해촉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---  
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재심사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② (생략)

제21조(제안의 등급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제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(상장) 및 부상을 수여하며, 그 표창에 대한 공적심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<신설>

제23조(부상금의 지급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별표 2에 따라 별표 1의 노력제안을 선정하고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7조(창의마일리지 시상) ① 구청장은 창의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구청장표창(상장)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제안의 등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제안등급 중 금상·은상·동상·장려상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구청장 표창(상장) 및 부상을 수여한다.

③ 제1항의 제안등급 중 노력상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부상을 수여한다.

제23조(부상금의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 노력상-----  
-----.

제27조(창의마일리지 시상) ① -  
-----  
----- 구청장 표창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### 부상금의 지급(제23조 관련)

연 번	상 급	부상금 및 격려품
1	금 상	100만원
2	은 상	60만원
3	동 상	30만원
4	장려상	10만원
5	<b>노력제안</b>	5만원 상당 격려품(문화상품권 등)

[별표2]

### 노력제안 선정 기준(제23조 관련)

대 상	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
선정기준	현시점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창의적이며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안건
선정방법	위원회 의결
지급범위	위원회 개최 1회당 20건 이내
지급방법	본인 및 대리인의 방문 수령 또는 우편에 의한 등기수령, SNS 지급 등

[별표3]

###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(제26조 관련)

구 분	운영방법
마포구 소속 공무원 및 부서 (동주민센터 포함)	1. 마일리지 부여방법(기준) : 공무원 및 부서별 마일리지 배점표에 따라 부여 ※ 마일리지 배점표는 구청장 방침에 따름 2. 마일리지 관리 및 동점자(부서) 처리 가. 공무원별, 부서별 구분 관리 나. 동점자(부서) 우선 순위 1) 창의과제 발굴 분야 고득점자 2) 창의활동 분야 고득점자 3) <b>창의교육</b> 분야 고득점자
그 밖에 각종 창의제안 제출 및 창의활동에 참여한 사람	1. 마일리지 부여방법(기준) : 개인 마일리지 배점표에 따라 부여 ※ 마일리지 배점표는 구청장 방침에 따름 2. 마일리지 관리 및 동점자 처리 가. 개인별 점수부여 및 관리 나. 동점자 우선 순위 1) 단순 민원성 제안보다 '우수창의 제안' 제출한 사람 2) 제안 제출 건수가 높은 사람 (같은 경우 전년도 포함)

[별표1]

### 부상금의 지급(제23조 관련)

연 번	상 급	부상금 및 격려품
1	금 상	100만원
2	은 상	60만원
3	동 상	30만원
4	장려상	10만원
5	<b>노력상</b>	5만원 상당 격려품(문화상품권 등)

[별표2]

### 노력상 선정 기준(제23조 관련)

대 상	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
선정기준	현시점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창의적이며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안건
선정방법	위원회 의결
지급범위	위원회 개최 1회당 20건 이내
지급방법	본인 및 대리인의 방문 수령 또는 우편에 의한 등기수령, SNS 지급 등

[별표3]

###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(제26조 관련)

구 분	운영방법
마포구 소속 공무원 및 부서 (동주민센터 포함)	1. 마일리지 부여방법(기준) : 공무원 및 부서별 마일리지 배점표에 따라 부여 ※ 마일리지 배점표는 구청장 방침에 따름 2. 마일리지 관리 및 동점자(부서) 처리 가. 공무원별, 부서별 구분 관리 나. 동점자(부서) 우선 순위 1) 창의과제 발굴 분야 고득점자 2) 창의활동 분야 고득점자 3) <b>창의학습</b> 분야 고득점자 4) <b>창의실행</b> 분야 고득점자

[별표4]

창의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기준표(제27조 관련)

구 분	시상 등급	시상금	비 고
개인 (구민, 공무원)	최우수	20만원 ~ 30만원(상품권)	상장
	우수	10만원 ~ 20만원(상품권)	"
	장려	5만원 ~ 10만원(상품권)	"
	노력	3만원 ~ 5만원(상품권)	"
부서 (과/동)	최우수	30만원 ~ 50만원	상장
	우수	20만원 ~ 30만원	"
	장려	10만원 ~ 20만원	"

※ 시상 인원수, 시상등급, 시상금 및 그 외 세부운영 규정은 구청장 방침에 따르며, 기 수상자는 같은 연도에 한하여 선정 제외한다.

[별지1]

[별표4]

창의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기준표(제27조 관련)

구 분	시상 등급	시상금	비 고
개인 (공무원)	최우수	20만원 ~ 30만원(상품권)	상장
	우수	10만원 ~ 20만원(상품권)	"
	장려	5만원 ~ 10만원(상품권)	"
	노력	3만원 ~ 5만원(상품권)	"
부서 (과/동)	최우수	30만원 ~ 50만원	상장
	우수	20만원 ~ 30만원	"
	장려	10만원 ~ 20만원	"

※ 시상 인원수, 시상등급, 시상금 및 그 외 세부운영 규정은 구청장 방침에 따르며, 기 수상자는 같은 연도에 한하여 선정 제외한다.

[별지1]

**제심사 요청서**

제안제목			
접수번호	제안종류	심사결과를 고지받은 일자	
성명	주소 또는 소속 직급(직위)	연락처	
제심사 요청 사유			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제심사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새마포담당관 김동우
연 락 처	02-3153-8535